학술지 발행 관련 제규정

▶ 기관 정관(규정)

제1장 총칙

제 1조(명칭)
본 회는 충청수학회라 부르고 영어명칭은 Chungcheong Mathematical Society로 한다.

제 2조(목적)
본 회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수학의 연구와 이에 따르는 사업을 수행하며 수학발전과 나아가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그리고 본 회는 대한수학회 충청지부의 역할을 겸한다.

제 3조(사무실 소재)
본 회의 사무실은 충남대학교 수학과에 둔다.

제 4조(사업)
본 회는 매년 연구발표회를 가지며 학술지를 간행한다. 그리고 본 회의 목적에 적합한 기타 사업을 한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 5조(회원)
(1) 본 회는 충청지역의 수학 발전에 관심을 가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로 구성한다.
(2) 본 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.정회원: 수학 또는 이와 관계가 있는 지식을 가진 개인으로서 제5조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는 자.
2.학생회원: 수학 또는 이와 관계 있는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서 제5조가 정하

는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자.

3.명예회원: 수학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자.

4.종신회원: 60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제5조가 정하는 종신회비를 납입한 자.

5.찬조회원: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을 찬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제5조가 정하는 찬조회비를 납부한 자.

(3) 학생회비는 정회원의 2분의 1로 한다.

(4) (입회및회비)

1.정회원으로 입회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며 입회비 20,000원 및 연회비 30,000원을 납부한다.

2.학생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10,000원을 납부하고

연회비는 정회원의 1/2로 한다.

3.찬조회원의 연회비는 정회원의 2배 이상으로 한다.

4.종신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종신회비로 100,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.

제 6조(임원)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2인
3. 총무이사 1인
4. 편집이사 1인
5. 사업이사 20인 이내
6. 감사 2인

제 7조(임원의 직무)

(1)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부를 총괄한다. 회장은 대한수학회 충청지부장을 겸임한다.

(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.

(3) 감사는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(4) 총무이사, 편집이사 및 사업이사들은 본 회의 학술, 재무 및 사업 등의 제반회무를 담당한다.

(5)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,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회원의 입회 및 자격
- 각 위원회

- 사업계획 및 보고
- 입회금, 회비, 찬조금
- 재산관리
- 기타

제 8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부회장, 총무이사 등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회장은 1회까지 중임할 수 있다.

제3장 회의

제 9조(총회)
본 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중에 정기총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학생회원,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은 총회에서 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.

제 10조(위원회)
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의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4장 재정

제 11조(회계년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 해마다 12월말까지로 한다.

제 12조(자산)
본 회의 자산은 입회금,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 13조(재정)
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산에서 충당한다.

제 5장 편집위원회

제 14조(학술지)
본 회는 학술지 충청수학회지(Journal of the Chungcheong Mathematical Society)를 년 4회 발간하며,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
제 15조(사무실 소재)
편집위원회의 사무실은 충남대학교 수학과에 둔다.

제 16조(구성 및 선출)
(1)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, 그리고 4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(2)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맡고,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17조(임기)
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18조(직무)
(1) 편집위원장은 충청수학회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(2)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위원선정, 논문게재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.

제 6장 학술위원회

제 19조(구성 및 선출)
(1) 학술위원회는 학술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학술위원으로 구성한다.
(2) 학술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임명하고, 학술위원은 학술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20조(임기)
학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21조(직무)
학술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 진흥과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

한다.

제 7장 부칙

제 22조(부칙)

본 회칙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 본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은 관례에 준한다.

제 23조(부칙)

본 회칙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.

제 24조(부칙)

본 회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5조(부칙)

본 회칙은 200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6조(부칙)

본 회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현재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▶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

제 5장 편집위원회

제 14조(학술지)

본 회는 학술지 충청수학회지(Journal of the Chungcheong Mathematical Society)를 년 4회 발간하며,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
제 15조(사무실 소재)

편집위원회의 사무실은 충남대학교 수학과에 둔다.

제 16조(구성 및 선출)

(1)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, 그리고 4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
(2)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맡고,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17조(임기)

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18조(직무)

(1) 편집위원장은 충청수학회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(2)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위원선정, 논문게재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.

▶ 심사규정

충청수학회 논문심사 규정

제 1조 충청수학회 회칙 제 16조에 의하여 논문 심사규정을 제정 운영한다.

제 2조 충청수학회지에는 국제적인 수준의 논문만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조 투고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

제 4조 논문 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접수를 거부하거나, 수정 보완하여 재투고 하도록 한다.

제 5조 **(논문 심사 기준)** 투고된 논문은 다음 사항에 의하여 심사하며, 각 항목마다 (최우수, 우수 , 보통, 열등)으로 평가한다.

① 논문의 창의성 ② 결과의 우수성

③ 표현의 명확성 ④ 문장의 정확성

⑤ 학문의 기여도

심사위원은 각 항목에서 "우수' 이상의 평가를 받은 논문만 게재 추천할 수 있다. 적어도 한 항목에서 "보통" 이하의 평가를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완, 재투고, 또는 게재 불가를 결정한다.

제 6조 (논문심사)

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이 직접 심사하거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한다.

제 7조 (논문심사 절차)

① 편집위원장은 해당 전공분야의 편집위원 또는 가장 적합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학회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 의뢰한다.

② 심사위원은 제5조(논문 심사기준)을 근거로 2개월 이내에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심사결과 논문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,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한다. (소정양식 사용).

⑤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 20일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 완료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제 8조 : 게재 불가 판정된 논문은 재심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 9조 (기타결정사항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 10조 부칙

① 본 규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본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③ 본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▶ 투고규정

충청수학회지 논문투고 규정

제 1조 충청수학회 회칙 제16조에 의거 충청수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.

제 2조 본 규정은 충청수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논문에 적용한다.

제 3조 투고하는 논문은 순수 및 응용수학 전 분야에 걸쳐 창의성 있는 연구논문이어야 한다.

제 4조 충청수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제출하지 않는 논문이어야 한다.

제 5조 논문의 첫 쪽 상단에는 논문제목, 저자 명, 논문 초록이 명기되어야 한다. 저자의 주소(e-mail)는 논문의 마지막 쪽 제일 끝 부분에 기재한다.

제 6조 논문제목은 내용을 대표하는 간단 명료한 것이어야 한다.

제 7조 ① 논문 초록은 논문 내용을 요약 설명하는 평범한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.
② 논문 초록은 완전한 문장이어야 하며 300 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 8조 논문 첫 쪽의 각주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한다.
① 202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
(미국 수학회에서 제정한 2020 수학내용 분류기호)
② 논문 내용을 대표하는 주요 단어 및 구(key words and phrases)
논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본문의 내용에 인용된 참고 학술지 및 도서에 관한 서지정보를 나타내는 참고문헌이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.

제 9조 투고 논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논문투고자는 논문 2부를 충청수학회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직접 투고한다. 경우에 따라서는 투고논문의 원문 PDF 파일과 TEX 파일을 충청수학회에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자투고를 할 수 있다. 논문원본은 저자가 보관한다.

제 10조 논문 원고는 AMS-TEX 또는 AMS-LaTEX를 사용하여 영문으로 작성한다.

제 11조 논문에 관한 모든 문의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한다.

제 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 13조 ① 본 규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본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③ 본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▶ 발행규정

충청수학회 학술지 발행 및 배포에 관한 규정

제 1조 이 규정은 제 4조에 규정된 기타 사업 중 학술지 발행 및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충청수학회지는 2월 15일, 5월 15일, 8월 15일, 11월 15일에 발행한다.

제 3조 ①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원과 기관 및 당해연도 구독료를 납부한 기관(도서관)에 충청수학회지를 발송한다.

② 각기관(도서관)의 구독료는 연간 100,000원으로 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결될 수 있다.

제 4조 ① 학술지를 국내의 다른 기관의 출판물과 교환할 수 있다.

② 학술지 교환사업에 의하여 입수된 도서는 충청수학회 자료실에서 관리한다.

제 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독료 및 발행부수 등 기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 6조 ①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▶ 연구윤리 관련 규정

충청수학회 윤리규정

충청수학회는 연구수행과 연구 결과물 출판 및 발표 등의 학술활동에 있어 윤리책무와 권리를 기술하기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한다. 본 규정은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한다. 충청수학회 회원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수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.

제 1장 총칙

제 1조(목적)

이 규정은 충청수학회(이하 "본 학회"라 한다)의 연구, 출판,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책무와 권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적용대상 및 범위)

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과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.

제 2장 윤리 위원회

제 3조(구성)

① 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으로 구성 한다.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4조(위원회 소집)

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
② 회의 소집 사실,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원들에게 통보한다.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5조(임무)

①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
② 회원의 징계심의 및 의결

③ 윤리규정 개정
④ 연구 부정행위 조사 및 판정
⑤ 기타 위원회에 부과된 업무

제 6조(의결방법)
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제 7조(의결기한)
① 위원회에서는 접수 받은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해당 사안을 의결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② 당해 사건이 소송 중에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의결 기한을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제 8조(심의사항 처리)
① 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,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, 날인한다.
② 학회장은 통보된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.

제 9조(결정의 효력)
심의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. 다만 회원 등의 징계결정은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피소자의 재심 요청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발생한다.

3장 연구 부정행위

제 10조(연구 부정행위 범위)
연구 부정행위는 연구 개발 과제의 제안, 연구 개발의 수행 및 결과 보고 및 발표 시 발생하는 부정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크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① 연구 개발 자료 및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
② 특수 관계인 등 부당한 논문 저자를 표시하는 행위
③ 타인의 연구 개발 자료 및 결과 등을 고의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표절하

는 행위
④ 연구 결과 심사 시 피심사자의 나이, 성별, 출신학교, 소속 및 직위, 종교, 인종 등에 영향을 받아 불공정하게 심사하는 행위
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
⑥ 학술활동에 대한 기타 부정한 행위

제 11조(연구진실성 검증 주체)

본 학회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을 경우 제4조(위원회 소집)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며,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내용을 의결한다.

제 12조(후속조치)

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.
① 충청수학회지에 5년간 투고 금지
② 온라인 충청수학회지에서 논문삭제
③ 충청수학회지 홈페이지 및 출판물에 해당 연구 부정행위 공시
④ 연구 부정행위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해당 연구 부정행위 통보

부칙

1. 이 규정은 200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2. 개정된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▶ 기타 규정

충청수학회 윤리헌장

충청수학회는 충청수학회 회원(이하 회원)이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강령을 제정하여, 회원이 자율적으로 이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,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며, 스스로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, 수학발전과 나아가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.

1. 회원은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,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.

2. 회원은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,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, 계획,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. 특히, 날조, 변조,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.

3.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, 설계, 수행,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·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.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.

4. 회원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, 공평성,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.

5. 회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.

2007년 5월 26일 제정